

화순군 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2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2. 18
- 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2. 18
(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김 종 철

나. 제정사유

- 화순군 금고의 합리적인 선정절차를 정하여 자금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성있게 관리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금고 선정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.(안 제2조제1항)
-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선정한다.(안 제3조)
 1.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적인 신용도
 2.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율
 3. 군민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
 4.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취급능력
 5.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
- 군수는 금고선정을 위하여 대학교수, 공인회계사, 변호사, 세무사등 관련 전문가와 군 세입징수관, 의장추천 2인등 9인 이내로 금고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며,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 (안 제4조제1항)

- 금고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. 군수는 공개경쟁 또는 제한 경쟁방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기간 만료 90일전까지 군보에 공고하고,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.
(안 제5조제1항)
- 군수는 국내·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군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군 표준 약정서상 해지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(안 제7조제1항)
-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(안 제7조2항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 화순군 금고의 지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음.
- 지방재정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지방자치단체장의 금고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 금융기관간의 금고 계약행위”라고 볼때 금고계약에 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되며,
- 우리군의 여건상 예상되는 읍면에 대한 송금, 수납업무등의 문제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금융업무의 일부 대행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임.
- 아울러,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어떤 방법과 절차로 금고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겠는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,

- 인천광역시와 순천시에서 기 “금고선정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동 조례의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 금고선정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화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10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2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- 화순군 금고의 합리적인 선정절차를 정하여 자금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성있게 관리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금고 선정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.(안 제2조제1항)
-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선정한다.(안 제3조)
 1. 재무구조의 건정성 및 대내외적인 신용도
 2.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율
 3. 군민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
 4.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취급능력
 5.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
- 군수는 금고선정을 위하여 대학교수, 공인회계사, 변호사,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군 세입징수관, 의장추천 2인등 9인 이내로 금고선정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한다)를 구성하며,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(안 제4조제1항)
- 금고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. 군수는 공개경쟁 또는 제한 경쟁방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기간 만료 90일전까지 군보에 공고하고,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.(안 제5조제1항)
- 군수는 국내·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인제의 군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군 표준 약

정서상 해지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(안 제7조 제1항)

-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,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(안 제7조2항)

화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화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군금고의 합리적인 선정절차를 정하여 자금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금고의 선정) ①금고 선정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선정된 금고의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③금고는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.

제3조(선정기준)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선정한다.

1.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적인 신용도
2.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율
3. 군민의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
4.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취급능력
5.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
6. 기타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4조(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) ①군수는 금고선정을 위하여 대학교수, 공인회계사, 변호사,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군 세입징수관, 의장추천 2인등 9인 이내로 금고선정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며,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③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·활동기간은 금고계약만료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한다.

④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의거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금융기관의 제출자료를 평가·심사한다.

제5조(선정절차) 금고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다.

①군수는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기간 만료 90일전까지 군보에 공고하고,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선정 세부기준안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.

③심의위원회는 금고선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·심사한 후 심사표에 의한 심사결과를 금고계약 만료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제출받아 금고를 선정한다.

⑤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선정의 공표와 약정) ①군수는 금고를 선정한 경우 5일 이내에 금고선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, 금고계약만료 30일전까지 금고 약정을 체결한다.

②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군 표준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.

③군의 표준약정서에는 각종 법령·조례·규칙의 준수 의무,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, 일시차입 및 기채, 배상 및 변상책임, 계약해지, 계약조문해석,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.

④군수는 금고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금고의 중도해지) ①군수는 국내·외 금융시장이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현재의 군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군 표준 약정서상 해지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금고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중도해지시 재계약을 당초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자금운용 상황보고) ①금고는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각종 기금의 자금운용 상황을 분기별, 연도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금액, 예치기간, 금융상품별 수익률, 이자수입총액,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.

제9조(실비변상)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참석 시에는 예산의

범위내에서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금고약정에 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적용기간을 예외로 할 수 있다.